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원보안관리대 기능 확대 및 명칭 변경〉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783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법원보안관리대 기능 확대 및 명칭 변경 등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52인
2. 제 안 일 : 2025. 3. 11.
3. 회 부 일 : 2025.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법부 판결에 부정, 불복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심지어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살해 협박 등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까지 발생하였음.

이는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이자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법관 인력의 유지 및 신규 법관 유인에도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사법부 역량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큼.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에, 이러한 과도한 수준의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그렇기에 국가도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신변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 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국가가 필요한 경비, 인력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직의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수정하는 등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법원보안관리대 기능 확대 및 명칭 변경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 등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의 신변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법관 및 법원직원의 신변보호 강화를 위하여 법원보안관리대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고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법원보안관리대의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변경함(안 제55조의2 조 제목 등). 둘째, 법원경비대의 설치 목적에 법관과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함(안 제55조의2제1항). 셋째, 법원경비대 대원이 법관과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5조의2제2항제4호). 넷째, 법원경비대가 청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경비를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5조의2제3항). 다섯째, 국가가 법원경비대의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인력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함(안 제55조의2제5항). 여섯째, 대법원장 또는 각급 법원의 장이 법관과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u>법원보안관리대</u>) ① 법정의 존엄과 <u>질서유지</u>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u>법원보안관리대</u> 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의2(<u>법원경비대</u>) ① ----- ----- <u>질서유지, 법관과 법원</u> <u>직원의 신변보호</u> 및----- ----- <u>법원경비대</u> ----- ----- -----.
② <u>법원보안관리대</u> 의 대원은 법원청사 <u>내에 있는 사람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 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② <u>법원경비대</u> ----- ----- <u>내외에서</u> ----- ----- -- <u>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u>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법관 또는 법원직원을 협박하는 경우</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u>법원보안관리대</u> 의 대원은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③ <u>법원경비대</u> 의----- -----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제60조(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① (생략)

<신설>

<신설>

② 제1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내외의-----

-----있으며,
출입문 등 법원 청사 외부의
위해로부터 출입자를 적극 보
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는 법원경비대가 그 업
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0조(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의 장
은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
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④ -----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 -----받으며, 제2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하여 대법원장 또는 각급 법원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	--

나. 검토의견

- 2005. 12. 23. 법원조직법 개정(법률 제7730호, 2006. 1. 1. 시행)을 통해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경비관리대(신설 당시 명칭, 이후 법원보안관리대로 변경)’가 창설되었음.

개정법률에 따라 법원경비관리대 대원이 법원청사 내에서의 구체적이고 급박한 위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법원청사 출입자에 대한 검색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법원경비관리대는 법정방호인력(법정 질서유지)인 법정경위와 청사 방호인력(법원청사 방호)인 방호원·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현재의 사회복무요원) 등을 통합한 조직으로 구성되었음.

- 법원경비관리대라는 명칭은 ‘경비’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외곽 경비’를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법정 질서유지와 청사 내 방호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원경비관리대의 업무를 모두 포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4. 1. 7. 법원조직법 개정(법률 제12188호, 2014. 1. 7. 시행)을 통해 현재의 “법원보안 관리대”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음.
- 현재 법원보안관리대 대원은 각급 기관(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별로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과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지무원 등으로 구성됨(「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3조1)).

2025년 9월 30일 현재 법원보안관리대 정원 및 현원 현황을 살펴 보면, 정원은 1,029명(보안관리직 823명 등), 현원은 1,061명(보안 관리직 657명, 임기제 법원보안관리대원 196명 등)임. 참고로, 이와 별도로 사회복지무원(약 600여명)이 추가로 법원보안관리대에 소속되어 보안 업무를 수행 중임.

1)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구성)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지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법원보안관리대 정원 및 현원 현황>

(2025. 9. 30. 현재)

구분	직렬	직급	정원	현원
법원 보안관리대	법원경위 (구 법정경위)	경위사무관	7	7
		경위주사	44	66
		경위주사보	24	43
		경위서기	41	-
		경위서기보	-	-
		계(법원경위)	116	116
	보안직 (구 방호원)	보안주사	-	2
		보안주사보	-	53
		보안서기	-	-
		보안서기보	53	-
		계(보안직)	53	55
	보안관리직 (별정직·임기제 법원보안관리대원 전환자)	보안관리주사보	-	-
		보안관리서기	-	294
		보안관리서기보	823	363
		계(보안관리직)	823	657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2006년~2019년)		3	3
	임기제 법원보안관리대원(2019년 이후)		-	196
	청원경찰		34*	34
	계		1,029	1,061

자료: 법원행정처

* 청원경찰은 정원 개념이 없음

- 최근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²⁾나 과거 법관 석궁 테러 사건³⁾ 등에서 보듯이 시위자나 재판관계인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법관 등 사법부 구성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들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 보안관리대의 설치 목적에 ‘법관과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는 등 법원보안관리대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2) 연합뉴스, ‘美의사당 폭동’ 연상케 한 ‘서부지법 난동’...왜 과격해졌나, 2025. 1. 19. 등 참조

3) MBN, ‘판결 불만’ 전직 교수, 부장판사 석궁 테러, 2007. 1. 15. 등 참조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첫째, ‘법관 및 법원직원의 신변보호’와 같이 보안업무의 목적 또는 대상을 기관 전체 차원이 아니라 구성원 개인 차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원경비대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임.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법」은 경호업무의 목적을 ‘국회의 질서 유지’나 ‘국회의 경호’로 명시하고 있고, 특정 인물의 경호나 신변 보호를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같이 특정 인물에 대한 경호를 기관(대통령경호처)의 목적으로 규정한 사례도 있기는 하나, 이는 국가수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경호대상도 대통령과 그 가족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4) 「국회법」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 둘째, “법원보안관리대”의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변경하는 것은 “법원경비관리대” 창설 당시 ‘경비’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외곽 경비’를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법정 질서유지와 청사 내 방호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원경비관리대의 업무를 모두 포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4. 1. 7. 법원조직법 개정(법률 제12188호, 2014. 1. 7. 시행)을 통해 현재의 “법원보안관리대”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던 연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대법원장 또는 각급 법원의 장이 법관과 법원직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사유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우려가 있는 점, 「국회법」의 경우에도 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건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정(「국회법」 제144조제2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다. 관계기관 의견

- 법원행정처는 현행법상 법원보안관리대 유형력 행사 범위가 ‘법원 청사 내’로 한정되어 있고,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원 청사 인근에서 발생하는 위협적인 행위에 대하여 법원보안관리대가 이를 직접 저지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지원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보안관리대의 유형력 행사의 범위와 경찰공무원의 파견 사유를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함.

다만, 법원보안관리대의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법원관리경비대”라는 명칭은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포섭하여 표상할 수 없어 법원조직법 개정(2014. 1. 7. 시행)을 통하여 “법원보안관리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법원경비대”로 변경할 경우 오히려 현행법보다 조직이 수행하는 역할을 표상하는데 있어 축소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임.

- 경찰청은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의 장이 법관 또는 법원 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그 규모나 기간 등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치안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신변보호 업무를 국가적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1